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호기관의 임시주거시설 사전 확보 의무 근거 마련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31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30.
3. 회부연월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들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① 임시주거시설의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안 제2조),

②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비상대피시설과 가설건축물을 추가하여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안 제4조의2제1항제6호 및 안 제4조의2제3항),

③ 구호기관¹⁾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도 임시주거시설을 추가하여 임시주거시설의 확보·관리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및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

1)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5. ~ 8. (생략)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u>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u>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u>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u>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u>다음</u>-----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민방위기본법</u>」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u>물품·장비</u>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u>물품·장비</u>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	② (현행과 같음) ③ <u>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u> ④ <u>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확보한 시설 현황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 ----- -----<u>임시주거시설 및 물품</u>----- ----- ----- ----- -----. ② ----- ----- -----<u>임시주거시설 및 물품</u>----- ----- ----- -----

현행	개정안
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해당 8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3,592동의 전파 주택, 256동의 반파 주택 피해를 포함하여 주택 관련 피해액이 3,502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사유시설 재산피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물량	피해액
총계		-	517,473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반파(동)	256	11,589
	세입자(세대)	358	-
	주거불가능(세대)	572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 / 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 / 24,509 /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어망어구 / 어선(건)		30	173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와 같은 대형 재난으로 주택 등 주거 시설의 다량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 차원에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재난의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재민등에게 임시주거시설은 발생한 재난으로부터의 대피뿐만 아니라 연이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재해를 복구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 발생에 따라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높은 구호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구호기관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추가하여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구호기관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확보·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해야할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재난 발생 이후 이재민등에게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6. (생략)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용어 정의에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안 제2조)하여, 현행법에서는 구호의 종류 중 하나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규정³⁾하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따라서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주거시설 관련 규정들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둘째,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과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안 제4조의2제1항제6호 및 안 제4조의2제3항)하여, 개정안은 이재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재민등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시설들이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는

3)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제26조제4항제3호(임시주거시설의 지원)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현실적으로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⁵⁾의 경우 현행법의 임시주거시설과 목적과 기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임시주거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비교 >

구 분	비상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
목적과 기능	• 적의 포격 도발 등 공격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일시적 대피	• 재난사고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의 임시(며칠부터 수개월까지) 주거 시설로 제공
시설의 구조적 특징	• 대피시설 대부분(약 98.5%)가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사 등 지하 공간이며, • 일시적 대피를 위한 시설로 생활필수시설,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급수, 화장실, 환기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과 냉·난방,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 사생활 보호용 텐트, 칸막이 등 설치와 현장 인력 배치·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시설로 지정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시설과 교육 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과 같이 주거공간으로서 대체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주거시설의 목적이 주거

5)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생활의 안정에 있고 기본적인 급식과 급수, 취침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⁶⁾.

반면, 비상대피시설은 일시적 대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⁷⁾, 설치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이재민등의 생활 안정 및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임시주거시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 재해복구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다는 해당 법률의 규정⁸⁾에 비추어 볼 때, 임

-
- 6)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7) 실제로 전체 비상대피시설의 98.5%에 해당하는 16,820개 대피시설은 적의 포격 등 도발시 일시적 대피 용도이며, 급식·급수·화장실 등 임시 주거를 위한 생활 필수·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244개 중 일부 시설에만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8)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을 규정한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관리에 입법 목적이 있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안전, 도로에의 인접 조건, 건축물의 구조내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이재민등의 주거생활에 있어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임시주거시설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 안전 관련 규정 >

구 분	내 용
대지의 안전 (건축법 제40조)	•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 • 건축물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에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함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의 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난연재료 등 활용 (건축법 제52조)	•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추가하는 경우 임시주거시설의 범위가 현행법보다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재해복구 및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거시설의 기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동안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의 확보도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임⁹⁾.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의거¹⁰⁾ 2019년부터 이재민등의 일시 주거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¹¹⁾ 가설건축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절차상의 준용 규정일 뿐이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재민의 주거 생활공간으로서 일정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차이가 있음.

9)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2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임시주거시설은 ①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일 것, ② 구호물자의 배분 등을 위하여 도로에 접해 있거나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일 것, ③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및 붕괴 위험지역, 화재·붕괴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거나 위험한 시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10)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0조(조립주택의 설치)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요 >

구 분	내 용
개념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임시주택
지원기간	12개월 이내에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 주택 복구가 장기화 될 경우, 구호기관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간 연장 가능
수급계획	(목적) 대규모 산불, 호우·태풍 피해로 인한 임시조립주택 수요에 대비, 계획성 있는 관리로 이재민 주거안정에 기여 (수립주기/수립주체) 매년 /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내용) 재난시 수요 발생 대비 사업추진단 구성, 계획적인 재사용을 위한 보관부지 확보, 회수 주택 재사용 목표 설정
안전성 및 필수시설	- 표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축조 - 구조내력 확보(적설하중, 풍하중, 충격 등 대비) - 상수도, 전기, 소방 설비(화재감지기) - 바닥난방, 에어컨,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방 등 구비 - 단열·난연 성능 확보 -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성 있는 곳에 설치 제한
구성	- 본동과 본동에 추가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부속동 (본동) 24㎡(약 7.3평) 크기, 방·거실, 주방, 화장실 등 구비 (부속동) 방, 다용도실, 창고 등을 본동에 추가시설로 제공
	 외부  내부 (방 1, 거실겸주방 1)  내부(화장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난 2025년 3월 경상북도 지역 산불 이재민등의 주거 지원에도 활용되어, 안동시 944동, 의성군 241동, 청송군 457동, 영양군 96동, 영덕군 800동 등 약 2,500여 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건립 중에 있음¹²⁾.

개정안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려는 취지는 재해 발생 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등에게 차질 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행법 체계를 통해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주거 공간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은 임시주거시설과의 사용 목적 차이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제공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사용이 가능해져 이재민등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경상북도청 보도자료(2025. 5. 16.),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에 도로명주소 선제적 부여”

참고

2019 ~ 2023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¹³⁾

연도	재난 구분	시도	시군	임시조립주택	
	12개 재난	7개 시도	21개 시군	955동	
'23	① '7.9~19. 호우 (국비 지원)	2개 시도	6개 시군	합계	44
		충북	충주시	소계	2
			음성군		1
		경북	영주시		2
			청송군		1
			예천군		29
			봉화군		9
	② 태풍 '카눈' (국비 지원)	2개 시도	2개 시군	합계	6
		대구	군위군	소계	5
		경북	김천시		1
	③ 강릉·홍성 산불 (국비 지원)	2개 시도	2개 시군	합계	156
		강원	강릉시	소계	124
		충남	홍성군		32
'22	①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국비 203, 재해구호협회 12)	2개 시도	3개 시군	합계	214
		경북	울진군	소계	188(협회 12)
		강원	동해시		23
			강릉시		3
	② 8.8~17. 호우 (국비 지원)	2개 시도	2개 시군	합계	13
		경기	양평군	소계	8
		충남	부여군		5
	③ 태풍 '힌남노' (국비 지원)	1개 시도	2개 시군	합계	3
		경북	포항시	소계	2
			경주시		1
'21	① 7.5.~8. 호우 (재해구호협회 지원)	1개 시도	1개 시군	합계	4
		전남	광양시	소계	4
	② 태풍 '오마이스' (재해구호협회 지원)	1개 시도	1개 시군	합계	1
		경북	포항시	소계	1
'20	① 집중 호우(129/35) (국비 지원)	5개 시도	12개 시군	합계	129
		경기	안성시	소계	9
			용인시		1
		강원	철원군		1
		충북	충주시		13
			제천시		19
			음성군		3
			단양군		2
		충남	예산군		4
			담양군		18
		전남	구례군		50
			곡성군		6
			함평군		3
② 안동 산불(2/0) (재해구호협회 지원)	1개 시도	1개 시군	합계	2	
	경북	안동	소계	2	
'19	① 태풍 '미탁'(46/4) (국비 지원)	2개 시도	3개 시군	합계	46
		강원	삼척시	소계	35
		경북	울진군		10

13) 2024년의 경우 별도 지원 현황 없음

연도	재난 구분	시도	시군		임시조립주택
	② 강원 산불(337/29) (국비 지원)	1개 시도	영덕군		1
			4개 시군	합계	337
		강원	고성군	소계	275
			속초시		23
			강릉시		34
			동해시		5

자료 :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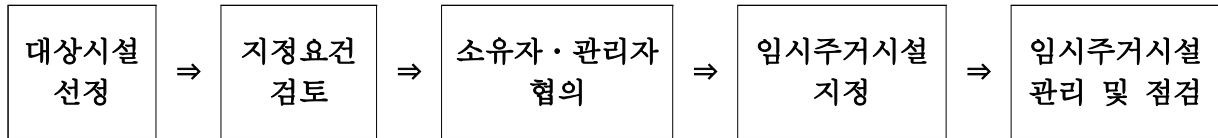
셋째, 구호기관이 사전에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확보 시설 현황을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안 제4조의2제4항 및 안 제6조) 하여,

개정안은 재해 발생 이전에 구호기관이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확보·관리하여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등에게 신속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취지가 있으며, 이는 현행 임시주거시설의 확보 및 관리 체계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관리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을 통해 구호기관이 평상 시 사전에 지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시주거시설별로 해당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 또는 해당 시설 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¹⁴⁾.

14) 「2025 재해구호계획」 제4장 임시주거시설 지원 p.59

< 현행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 절차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이러한 재해구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구호기관의 사전적인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의무를 명확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구호기관이 임시주거시설을 재해구호물자로서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점검할 법적 의무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안 제4조의2제4항)하면서, 확보해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도 임시주거시설을 포함(안 제6조제1항)하는 것은 구호기관의 임시주거시설 확보 의무를 중복적으로 규율하는 측면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확보한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재해구호법」 제5조제5항¹⁵⁾을 고려할 때,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과 관련된 조항에 규정하기 보다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15) 「재해구호법」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라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할 경우, 법적 구속력에 의한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임시주거시설의 사전 확보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참고

시·도별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¹⁶⁾ (2025. 5. 기준)

시 도	임시주거시설			지진검용 임시주거시설		
	개소	면적	수용능력(명)	개소	면적	수용능력(명)
합 계	15,872	12,083,318	3,961,203	6,132	7,197,285	2,346,629
서울	1,204	1,143,685	347,377	815	868,275	273,062
부산	515	334,447	112,969	318	262,913	90,527
대구	300	355,253	129,520	246	332,177	123,106
인천	614	537,338	187,956	348	353,583	121,157
광주	186	175,095	55,789	148	129,068	38,227
대전	200	159,475	58,682	101	106,199	38,830
울산	292	179,875	59,672	256	167,887	56,381
세종	159	80,454	30,768	101	73,513	28,123
경기	3,325	2,253,235	754,256	1,273	1,290,134	432,967
강원	747	419,726	137,146	243	203,488	70,981
충북	945	479,146	167,835	258	221,604	76,003
충남	1708	1,819,538	531,534	337	1,164,109	302,309
전북	591	482,180	169,529	251	250,497	87,935
전남	1,768	1,475,705	541,963	283	575,254	217,188
경북	1,710	1,332,688	399,353	584	723,538	223,526
경남	1,413	778,350	251,483	499	435,482	154,910
제주	195	77,128	25,371	71	39,564	11,397

자료 : 행정안전부

16) 시설 유형별 현황 : 학교 6,39540% (내진4,180), 경로당 3,81624%(225), 마을회관 2,27914%(46), 공공시설 2,01913%(1,241), 연수·숙박시설 6724%(188), 종교시설 2532%(24), 기타 4383%(228)